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수정(연장) 공고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시)제품의 공공 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하여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정(연장)**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특허청장

구 분	당초(제2023-204호, '23.7.31.)	수정(제2023-229호, '23.8.24.)
3. 신청대상	(자격요건) 2. 종료년도 기준 최근 3년('20.1.1.~'23.8.25[공고마감일]) 이내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자격요건) 2.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8.1.1.~'23.9.22[공고마감일]) 이내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대상) * (예외사항)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공고마감일('23.8.25) 기준 1년 이내('22.8.1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지정대상) * (예외사항)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마감일('23.8.25, 제 2023-204호) 기준 1년 이내('22.8.1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공고대상 확대	
4. 접수 기간 및 방법, 평가항목, 신청서류	o (접수기간) '23.07.31.(월) ~ '23.08.25.(금) 15:00까지	o (접수기간) '23.07.31.(월) ~ '23.09.22.(금) 15:00까지
	접수기간 연장	

1. 추진 목적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 구축을 지원

* IP-R&D 사업 중 중소기업 단독과제에 한함

2. 주요 내용

- 특허청 주관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됨(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특허청 고시 제2023-16호)

3. 신청 대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정대상 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요건)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8.1.1.~'23.9.22[공고마감일])** 이내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 IP-R&D 사업 중 중소기업 단독과제에 한함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지원불가
4.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전 사전확인
5. 신청기업이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 신청기업은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자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약정서(별첨 서식) 제출

(지정대상)

- o.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 (예외사항)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마감일('23.8.25, 제2023-204호) 기준 1년 이내('22.8.1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 개발완성수준(TRL) 참고사항 >

구 분	해당 내용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실험실 테스트 다수,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보유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 현장적용 사례 보유, 실증완료 보고서 보유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평가항목, 신청서류

- o (접수기간) '23.07.31.(월) ~ '23.09.22.(금) 15:00까지
- o (접수방법)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평가 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접수

(물품식별번호 등록 안내)

- o.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필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 o. 등록방법 : www.g2b.go.kr(나라장터)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o. 등록매뉴얼 위치 : 나라장터 홈페이지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 115.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조달업체 / 사용자설명서 122.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물품식별번호
- o. 콜센터 : (1588-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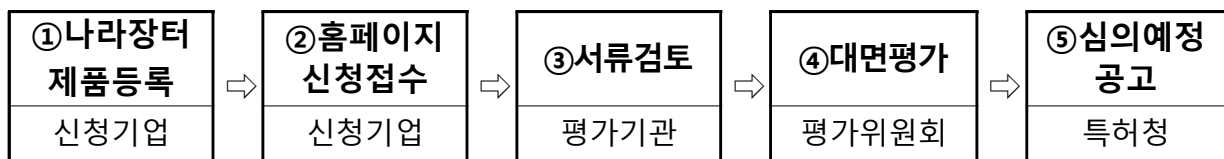
(신청접수 방법 안내)

-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온라인 신청
- o. 신청화면 위치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사업신청(신규)

o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①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서	필수	서식1
②	IP-R&D 전략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필수	
③	신청자(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④	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2
⑤	제품 규격서	필수	서식3
⑥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필수	
⑦	조달적합성 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4
⑧	약정서(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해당 시	서식5
⑨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 시	
⑩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 시	
⑪	매출 및 직접생산 관련 자료 ▷ 매출이 있는 경우 : 납품실적 관련 계산서,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거래일자, 금액 포함) ▷ 직접생산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제출	해당 시	

5. 주요 평가절차



o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여부 및 서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완을 요청

o (대면평가) 신청제품에 적합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의 평가항목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평가(9월 예정)

* '대면평가(발표)'와 '현장조사(필요시 개최)'를 통해 결과 확정

< 대면평가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분야적합성, 기술적용 여부	특허청 연구개발사업 간 연관성	적/부
	특허/인증 유효기간	
	시제품 여부(TRL 7단계 이상 등)	
	제품의 특허 적용 여부	
공공성 (40점)	공공현안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10
	공공구매의 필요성	10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10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혁신성 (30점)	특허제품의 신규성	10
	특허제품의 탁월성	1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시장성 (30점)	기대 시장 규모	15
	파급성	15

- (심의예정 공고) 평가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예정 대상임을 행정예고 예정(10월 이후 예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 별도 의뢰 및 반영

(평가 이후 진행사항)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하며, 확정된 경우 인증서 발급(특허청) 및 혁신장터 등록(조달청)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02-3459-2860, fast@kipa.org

[서식 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제 품 명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1					
		2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공공서비스 활용분야	☐ 에너지 ☐ 환경 ☐ 재난재해 ☐ 생활안전 ☐ 산업 ☐ 건강 ☐ 주거교통 ☐ 문화여가 ☐ 교육 ☐ 가족 ☐ 사회통합 ※ 신청제품이 적용될 공공서비스 활용 분야 중 가장 적합한 1개 선택하여 기재					
	기술구분	[] ①기계,금속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바이오,의료 ⑤화학,섬유 ⑥건설환경, ⑦기타()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유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특허기
 반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설명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 서류	1. 특허청 연구개발사업 수행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5. 기타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

제 품 설 명 서

1. 제품 개요

- 신청기업명 :
- 신청제품명/신청 모델건수 :
 - 대표모델 및 특징 (모델이 여러 건인 경우 작성)
- 용도
 -
- 주기능
 -
- 제품의 구조 및 핵심 성능 (그림, 사진 등 포함)
- 신청제품의 'IP-R&D 전략지원 사업' 수행 이력
 - 과제명 :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개월)
 - 개발비 : 천원(정부출연금 000천원, 자체부담 000천원)
 - 수행 내용 요약(핵심 결과물)

○ (전략수립, 디자인개발, IP출원 등)

○

- 신청제품 및 연구수행 결과의 연관성 (자율서술)

○ (IP출원한 경우 반드시 연관성 포함)

○

2. 제품의 공공성

○ 제품의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창출 관련성

-

<작성내용>

- 신청 제품을 적용한 공공현안 해결방안/사회적 기여 방법(환경 보호, 신산업 육성, 국민안전제고 등 구체적 서술)
- 공공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설명

○ 제품의 공공구매 필요성

-

<작성내용>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여부
- 개발품이 초기 제품 등의 이유로 민간 구매가 힘든 제품인지 여부
-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관련성 등)

○ 제품의 수요기관 구매적합성

-

<작성내용>

- 다수의 공공수요 또는 정책적·전략적 필요 현황 발생 여부(필요시 수요조사 내용 제시)
- 공공부문에서 기존 제품의 대체가능성 여부
- 공공부문에서의 가격 경쟁력 등

○ 제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작성내용>

- 비용 대비 혁신제품의 경제적 효용성 및 우위성 평가 자료
- 사용자 측면에서의 수월성(효과성) 및 경쟁력 지표

3. 제품의 혁신성

○ 특허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직접 관련 권리만 해당)

구 분	등록번호(일)	제목	등록내용 요약
특허			
실용신안			

○ 특허제품의 신규성

<작성내용>

-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 제품에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인지 등

○ 특허제품의 타월성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적용 비중 (반드시 관련 특허, 실용신안 적용 포함)
- 신청제품의 창의성 및 도전성, 차별성 제시 (국내외 경쟁사 포함)

구 분	기존 제품 기술	(추가 가능)	신청제품 기술(특허 등)
기능			
성능			
단가			
시장			
⋮			
(추가 가능)			

<작성내용>

- 신청 기술의 독립성 및 타 제품과의 차별성 등 중심으로 작성
- 경쟁사 현황 및 기능/가격/시장 등의 비교표로 제시
- 기존 제품에 유사한 기술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특허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관련 품질인증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내용

<작성내용>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관련 시험 결과 중심으로 작성
- 평가항목, 평가방법, 요구 기준 및 달성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
- 제품이 일관적인 품질·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

4. 제품의 시장성

○ 기대 시장규모

- 제품의 시장규모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예상치)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내수			
	수출			
국내시장 규모(억원)				
세계시장 규모(백만\$)				

* 산출근거 : (필수 기재)

- 시장 진입 전략 및 사업화 계획 등 관련 내용

<작성내용>

- 공공/민간 시장 진입 관련 기업의 마케팅/시장 진입 전략 등 서술
- 사업화 전략, 사업화 계획 및 일정 등 내용 포함 (정량적 근거 제시)
- 국내외 경쟁자 현황, 경쟁사 대비 가격 등 장점

○ 파급성

<작성내용>

- 다른 공공 또는 민간부문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발전 가능성
- 해외 기업의 적용 가능 제품, 수출 가능성
-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 판매 실적 (해당 하는 경우 작성)

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	납품일
			0000.00.00.

※ <작성내용> 가이드는 작성 후 삭제

[서식 3] 제품규격서

제 품 규 격 서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신청제품	제품명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분류명 (품명)	물품식별번호 (8자리)	제조여부
1					
2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총괄표]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요약표

6-2.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중심)

6-3. 성능 및 시험방법(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검사 및 시험 중심)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10.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작성방법>, <작성예시>는 작성 후 삭제

제 품 규 격 서 [작 성 방 법]

<1. 제품개요 >

- 1-1. 적용범위 : 제품 규격에 따른 용도, 예상되는 제품 구매처 등 제품 소개내용 작성
- 1-2. 특징 : 신청제품의 특징, 유사 용도의 타 제품과의 차별성, 우수성 등 작성

<2. 규격>

- 2-1. 제원 :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size 및 제품에 중요한 제원을 기입
- 2-2. 품질기준 : 신청기업에서 납품 가능한 기준 제시, KS 및 표준규격 해당할 경우 적용기준을 표기, 자사 규격을 제시할 경우 객관적 기준 반영하여 표기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 적용된 기술의 품질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구성, 재료>

- 3-1. 구성 : [총괄표] - 제품 모델별 재료 및 자재를 기입
- 3-2. 재료 : [주요자재소요량] - 각 자재별 소요량을 기입

<4. 형태>

- 4-1. 전체사진 : 각 규격에 따른 전체 사진
- 4-2. 제품구조 : 제품 구성부에 대한 사진, 그림 및 설명
- 4-3. 마감 및 외관 : 제품의 마감 및 외관에 대한 취급 등 작성

<5. 제조 및 가공>

- 제조 및 가공 과정상 적용된 기술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

<6. 기능 및 성능>

- 6-1. 요약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발기술과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성능을 작성
- 6-2. 기능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기술인증 적용시 반드시 기재)
- 6-3. 성능 및 시험방법 : 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 내용의 검사·시험방법 기재

<7. 하자보증>

- 하자발생시 책임 및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
- * 인명 관련 물품은 최소 3년, 시스템 장비는 최소 2년, 그 외는 최소 1년 기준

<8. 포장 및 표시>

- 8-1. 포장 : 제품종류, 무게 등을 감안하여 포장방법을 작성
- 8-2. 표시 : 제품 사용관련 주요 표시항목을 작성

<9. 적용자료>

- 받은 모든 인증의 규격을 기술.(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10.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증빙자료 별첨)
- ※ 참고사항 및 붙임 - 가구제품에 한하여 작성

제 품 규 격 서 [작 성 예 시]

1. LED 평판조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규격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략적인 소개내용]

< 예 시 >

이 규격은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학교, 사무실, 대형마트 등 실내조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형광등기구 대체용 LED등기구(광원일체형)로 실리콘수지를 이용한 확산시트(또는 광여기 확산시트) 및 방사형 방열구조를 가지는 인쇄 회로 기판을 가지는 LED 평판조명(이하 'LED등기구'라 한다.)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대략적인 특징]

< 예 시 >

- 가. 광여기 시트를 이용한 색 보정능력의 향상
- 나. 광여기 시트를 통한 연색지수 향상
- 다. 유해 자외선이 없는 천연배색 구현으로 Well-being 조명
- 라.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하여 하기 표에 기재]

< 예 시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품명)	물품식별번호 (8자리)	제조여부
1	korea2020	12345678	LED조명	*****	○
2					
3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Size(mm)	정격전력 (W)	CCT[K]	Input Power		비고
	S66D1-N	610x610x50	54	5700±10%	AC 95~240 V, 50~60 Hz		
	S66D1-D	610x610x50	54	6500±10%	AC 95~240 V, 50~60 Hz		
.....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을 작성,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 자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키겠습니다.”는 것을 기입하는 부분. 품질인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한 경우에 준해서 작성
- 제품관련 인증* 심사 등에 사용된 모든 기준 이상을 제시할 것
 - * 성능인증, NEP, GR, GS,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마크, 건마크, KS 등
- 단, 가구제품의 경우 KS인증여부와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KS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며,

-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준도 기입되어야 함
(최소녹색기준은 조달청 공고 2019-255호('19.12.31) 및 구매가이드라인참조)
- 표로 작성한 후, 표 하단에 “제품은 상기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의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예 시 >

항목	적용기준	비고
절연저항(M)	2이상	전 모델에 대해 적용
누설전류(mA)	1이하	전 모델에 대해 적용
접지()	0.5이하	전 모델에 대해 적용
역률	0.9이상	전 모델에 대해 적용
고조파함유율(%)	30이하	전 모델에 대해 적용
색온도(K)	1) 6020~5310 2) 7040~6020	1) S66D1-N, R313D1-N에 적용, 2) S66D1-D, R313D1-D에 적용
연색성(Ra)	75이상	전 모델에 대해 적용
등기구효율(lm/W)	65이상	전 모델에 대해 적용
.....		

■ 최소녹색기준

- LED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 이하	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60W 이하	60W 초과 100W 이하	100W 초과
등기구 효율	55 lm/W 이상	60 lm/W 이상	65 lm/W 이상	70 lm/W 이상	75 lm/W 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 유지율	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				
연색성	75 이상				

* 시험 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 아래 제시된 두개 표의 양식에 따라 작성
- 예시 1의 표에서 재료는 대략적인 재료를 기입, 자재구성표에는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기입
- 예시 2의 표에는 하나의 모델(제품단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을 기입, 그 부분에 있는 모든 구성품은 예시 1의 표의 자재구성표 안에 있어야 함
- 가구제품의 경우 '주요자재소요량'은 불임 #1을 참조하여 기재
(아래 예시2 양식은 작성하지 않음)

< 예 시 1 : 구성 >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S66D1-N	Steel, Aluminum anodized Polystyrene, Polycarbonate	① 반도체 소자류(LED포함) ② 강판 ③ 절연재료 ④ 나사, 커넥터 ⑤ PCB기판(방사형)
R313D1-N		
S66D1-D	Aluminum anodized Polystyrene, Polycarbonate	⑥ 광여기시트(확산시트) ⑦ 내부배선 및 외부배선 ⑧ 외함 ⑨ 컨버터(구동장치)
R313D1-D		
.....		

< 예 시 2 : 주요자재소요량 >

순번	모델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 위	수량	
1	S66D1-N	610x610x50	등박스	냉간압연강판	0.7T	개	1	한국
			프레임	Al6063	사출물	개	1	호주
			확산판	PC Plate	사출물	개	1	한국
			반사시트	PET	E60L	개	4	일본
			LED	5050PKG	InGaN/Sapphire	개	300	대만
			PCB	CEM-1	1.6T	개	4	대만
			PSU	MCW-4622K D	DC18.5V 4.5A	개	1	한국
2	R313D1-N	310x1280x50	등박스	냉간압연강판	0.7T	개	1	한국
			프레임	Al6063	사출물	개	1	호주
			확산판	PC Plate	사출물	개	1	한국
			반사시트	PET	E60L	개	4	일본
			LED	5050PKG	InGaN/Sapphire	개	300	대만
			PCB	CEM-1	1.6T	개	4	대만
			PSU	MCW-4622K D	DC18.5V 4.5A	개	1	한국
3	S66D1-D	610x610x50	등박스	냉간압연강판	0.7T	개	1	한국
			프레임	Al6063	사출물	개	1	호주
			확산판	PC Plate	사출물	개	1	한국
			반사시트	PET	E60L	개	4	일본
			LED	5050PKG	InGaN/Sapphire	개	300	대만
			PCB	CEM-1	CEM-1, 1.6T	개	4	대만
			PSU	MCW-4622K D	DC18.5V 4.5A	개	1	한국
4	R313D1-D	310x1280x50	등박스	냉간압연강판	0.7T	개	1	한국
			프레임	Al6063	사출물	개	1	호주
			확산판	PC Plate	사출물	개	1	한국
			반사시트	PET	E60L	개	4	일본
			LED	5050PKG	InGaN/Sapphire	개	300	대만
			PCB	CEM-1	1.6T	개	4	대만
			PSU	MCW-4622K D	DC18.5V 4.5A	개	1	한국
.....						...		

4. 형태

4-1. 전체사진

[각 규격에 따른 전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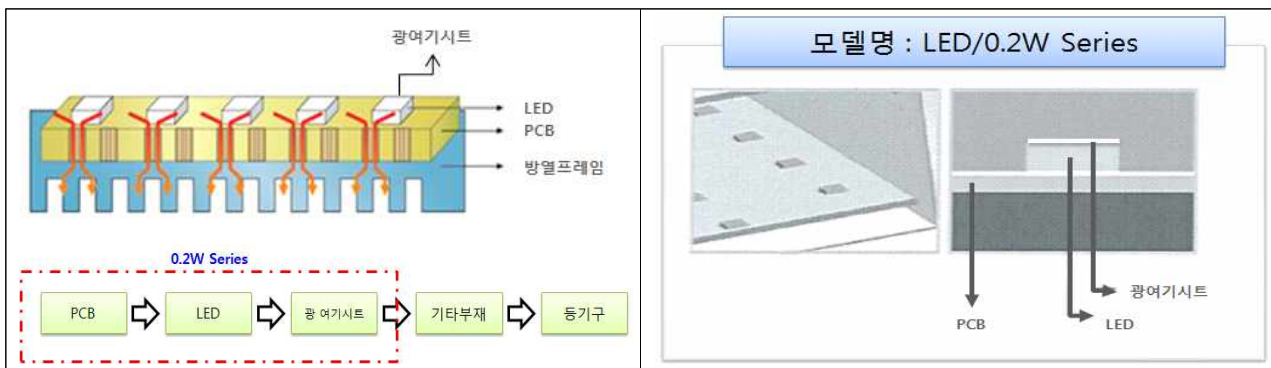
< 예 시 >

모델명	형 태
S66D1-N S66D1-D	
R313D1-N R313D1-D	

4-2 제품구조 (확산시트+방사형PCB구조)

[각 구성부에 대한 사진과 설명]

< 예 시 >



4-3 마감 및 외관

[제품의 마감 및 외관에 대한 취급 등에 대한 기술]

< 예 시 >

-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

5. 제조 및 가공

- o (특허가 적용된 경우)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 특허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드러나도록 내용을 기술하고, 내용과 관련된 특허번호와 특허명을 반드시 명시할 것
- o 각 제조공정에 관한 실제 사진이나 제조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할 것
- o 전체 공정 중에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의 아래에는 (특허 10-###호, 특허명) 기입

< 예 시 >

- 1) 등기구는 KS C 7653, KS C 7655, KS C IEC 60598-1, KS C IEC 62031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6-2. 기능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한다. 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증이 적용된 경우에 준하여 작성한다.]

<기술인증이 적용된 경우>

적용된(심사를 받은) 모든 기술인증을 기재하고,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NEP,NET,녹색기술인증 등을 서술할 경우 반드시 관련기술인증을 기재한다.

< 예 시 >

(1) 녹색기술(GT-12-001234) 실리콘을 이용한 확산시트 및 그의 제조방법

(관련기술인증 : 특허 제1011990호 방사형 발열구조를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LED조명)

실리콘수지를 이용한 확산시트(또는 광여기 확산시트)는 청색 파장 혹은 청색 파장과 청색 이외의 파장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혼합된 파장을 갖는 광원으로부터 발광된 빛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발광된 빛의 파장과는 다른 파장의 빛을 방광하고, 광원에서 발광된 빛의 나머지 부분을 투과하도록 하는 광여기 확산시트로서, 발광된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베이스수지층 상에 광원에서 발광된 빛을 여기 및 증폭시키는 광 여기 물질과 광원에서 발광된 빛을 산란 및 확산시키는 확산 물질이 액상의 실리콘수지 상에 혼합된 상태로 도포되어 경화형성된 확산층이 형성된다.

(2) 특허 제1011990호 방사형 발열구조를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

코어층 및 코어층의 일면에 적층되며, 발광부가 실장되고 발광부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하도록 방사형 형태를 가지는 패드 영역(제1 메탈층과 발광부를 절연시키는 제1 절연층)을 포함한다.

6-3. 성능 및 시험방법

[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 내용의 검사 및 시험 중심으로 작성한다. 품질인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래 품질인증이 적용된 경우에 준하여 작성한다.]

<품질인증이 적용된 경우>

○ K마크,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규격을 모두 기재

○ 성능인증의 기준에 따라 시험받은 경우

* (예시) K마크 인증 취득 시 관련 시험을 통과한 경우

‘성능인증(##-###호) 당시 인용한 「KTL C 050 LED조명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로 기입

○ 자사제시규격을 인용하여 인증받은 경우

* (예시) ‘성능인증 ##-###호, 성능인증명

성능인증 당시 인용한 자사제시규격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로 기입하고, 자사에서 제시한 세부규격(시험방법과 기준)을 기입

< 예 시 >

(1) K마크(PC12008-022) LED 평판 조명

「KTL C 050 LED조명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2) 고효율기자재에너지인증 - 매입형 LED등기구(46) (S66D1-N, 54W, 5700K), 매입형 LED등기구(47) (R313D1-N, 54W, 5700K), 매입형 LED등기구(261) (S66D1-D, 54W, 6500K), 매입형 LED등기구(262) (R313D1-D, 54W, 6500K)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의한 시험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3) 성능인증(12-345) 성능인증명

‘성능인증 당시 인용한 자사제시규격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로 기입하고, 자사에서 제시한 세부규격(시험방법과 기준)을 기입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0년

- o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기 등)은 3년
- o 시스템 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신호설비 등)은 2년
- o 그 외에는 1년

※ 업체의 희망에 따라 더 긴 기간 설정할 수 있음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자사에서 정하는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을 기입한다.]

< 예 시 >

8-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 1) 포장의 재질
- 2) 포장 방법
- 3) 치수 등

8-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 2) 정격전압(V)
- 3) 정격전류(A)
- 4) 정격전력(W)
- 5) 정격주파수(Hz)
- 6) 정격광속(lm)
- 7) 색온도(k)
- 8) 정격수명 시간(시간)
- 9) 역률
- 10) 광효율(lm/w)
- 11) ta, tc 기준값
- 12) A/S 연락처
- 13) 원산지
- 14) 제조연월

9. 적용자료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받은 모든 인증(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들의 규격에 관하여 기술한다. 단 그 규격 안에서 다시 인용한 규격은 아래의 적용자료에는 기입할 필요는 없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일 경우 관련자료를 기입한다.]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KTL C 050 LED조명등(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규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조달청 고시)

10.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구분	종류	인증번호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참고사항	가구제품에 한하여 작성할 것
------	-----------------

○ 품명: 실습대

11-1 유효기간

- 없음

11-2 표준 이화학 시험 소요일수

- 중간검사용 시료 :
- 납품검사용 시료 :

11-3 이화학 시험항목

완 제 품	시 험 편
- 연직 하중 시험 - 옆하중 시험 - 선반판의 하중 시험 - 문짝 부착부의 강도 시험 - 서랍의 강도 시험 - 개수통 바닥부의 강도시험 - 절연저항시험 - 내전압시험 - 내산성시험 - 내알칼리성 시험 - 개수통의 물 누수시험 - 상판 윗면의 휨 및 뒤틀림 시험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 - 금속부 도막 방청 시험 - 금속부 도막 경도 시험 - 목재부 도막 밀착성 시험 - 목재부 함수율 시험 - 목재부 포알데하이드방출량 시험

비고: 해당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11-4 사용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

- 운반 및 적재시 충격을 피하여 주십시오.
- 습기를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붙임 #1	가구 주요자재 소요량
-------	-------------

◎ 실습대 [W-1234]

[각 모델별로 표가 하나씩 있어야 함. 도면번호는 첨부된 도면을 기준으로 함]

도면번호	명칭	규격 및 특성
1	상 판	23T PB 윗면에 난연성 멜라민 시트지 접착 마감. 4면(테두리) 1.5T PVC 엇지 접착 마감.
2	뒷 판	18T PB 양면에 LPM을 접착, 0.6T PVC 엇지 접착 마감.
...		

주1)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재질 두께의 허용공차는 KS규격에 따르되, KS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격치 이상] 으로 한다.

[위 표에 해당하는 도면 첨부]

[서식 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부처	특허청						
신청기업 (기업 작성)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혁신제품 현황 (기업 작성)	명 칭	▶ 혁신제품명 :					
		구분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모델명
		1					
		2					
		3					
용 도	▶						
기 능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 빈칸으로 제출(조달청 작성 부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약정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 또는 다수에게 허여 되어 있는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참고사항) 적용기술의 권리자(특허, 실용신안)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